

1. 개정 이유

2026. 10. 2.부터 공소청법(법률 제21490호, 2026. 3. 24. 공포) 및 개정 형사소송법(법률 제21857호, 2026. 8. 4. 공포)이 시행됨에 따라, 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관련 규정 사이의 체계적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공증인에 대한 관리·감독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“검찰청”에서 “공소청”으로 변경됨에 따라 공증 서류 보존 관련 사항을 신고받는 기관을 “검찰청”에서 “공소청”으로 변경(안 제3조의2, 제6조)
- 나. 공증인에 대한 관리·감독 관할이 “지방검찰청” 단위에서 “지방공소청” 단위로 정해짐에 따라 관련 규정의 문언을 “지방검찰청”에서 “지방공소청”으로 변경(안 제7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공소청법, 형사소송법, 공증인법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

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2제2항 단서 중 “지방검찰청검사장”을 “지방공소청장”으로 한다.

제6조 중 “지방검찰청검사장”을 “지방공소청장”으로 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지방검찰청”을 각각 “지방공소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지방검찰청 관할구역”을 “지방공소청 관할구역”으로, “지방검찰청검사장”을 “지방공소청장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“지방검찰청”을 “지방공소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의2(전산정보처리조직등에 의한 보존) ① (생략)	제3조의2(전산정보처리조직등에 의한 보존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의 경우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서류는 폐기하지 아니하고 이 규칙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. 다만, 법 제24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서류는 소속 <u>지방검찰청검사장</u> 에게 신고하고 폐기할 수 있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 <u>지방공소청장</u> ----- -----.
제6조(보존 기간이 만료된 서류의 폐기) 공증인은 보존 기간이 만료된 서류를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목록을 작성하여 소속 <u>지방검찰청검사장</u>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	제6조(보존 기간이 만료된 서류의 폐기) ----- ----- ----- -- <u>지방공소청장</u> ----- -----.
제7조(서류 인계의 처리 기준) ① (생략)	제7조(서류 인계의 처리 기준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소속 <u>지방검찰청</u> 관할구역에 공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사망, 면직 또는 사임한 공증인과 같은 특별자치도·시·군 또는 구(자치구로 한정한다. 이하 “같은 특별자치도·시·군 또는 구”라 한다)에 있는 공증인에게	② -- <u>지방공소청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서류를 인계한다. 다만, 같은 특별자치도·시·군 또는 구에 공증인이 없는 경우에는 소속 지방검찰청 관할구역의 다른 특별자치도·시·군 또는 구의 공증인에게 서류를 인계한다.

③ (생략)

④ 소속 지방검찰청 관할구역에 공증인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서류를 인수한다.

⑤ 제4항의 경우 소속 지방검찰청 관할구역에 공증인을 새로 임명하거나 인가한 경우에는 그 공증인에게 서류를 인계하고, 인계한 날부터 2년 내에 같은 특별자치도·시·군 또는 구에 공증인을 새로 임명하거나 인가한 경우에는 인계한 서류의 일부를 다시 인계할 수 있다.

-----.

----- 지
방공소청 -----
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 지방공소청 관할구역---

지방공소청장-----
-----.

⑤ ----- 지방공소청

-----.